

기기인증관리체계를 위한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업무준칙

Ver 1.0

2009. 11



목 차

개 요

배경 및 목적
기기인증관리체계 관련자

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인증서 종류
인증서비스 수수료

인증서 발급 등 인증업무

인증서 유효기간
3.2 인증서 신규발급, 갱신발급, 재발급
3.3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공고설비
공고방법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5.1 물리적, 절차적, 기술적 보호조치
인적 보안
감사 기록 및 기록 보존
장애 및 재해복구

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보증
분쟁 해결

1. 개 요

1.1 배경 및 목적

본 인증업무준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의 기기에 대한 인증서 정책, 인증서 발급·관리 등 기기인증관리체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기기인증관리체계 관련자

1.2.1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원은 기기인증관리체계에서 최상위인증기관의 역할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한 기기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발급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2.2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은 기기인증서(기기의 진위여부를 식별하고 기기에서 송수신되는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기인증서 발급, 기기인증서 폐지목록 발급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2.3 신뢰당사자

신뢰당사자는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자로서 공인인증기관의 기기인증서 가입자 등을 포함한다. 신뢰당사자는 기기인증서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용범위 및 용도, 진정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2.1 인증서 종류

인터넷진흥원이 자가서명하여 발급한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서는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검증키가 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인터넷진흥원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가 공인인증기관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이 기기인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2.2 인증서비스 수수료

인터넷진흥원은 필요한 경우에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갱신 발급을 신청하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를 열람확인,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에 접근하는 신뢰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인증서 발급 등 인증업무

3.1 인증서 유효기간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키길이	
	1024bit	2048bit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기기인증서 발급용)	5년 이내	20년 이내

3.2 인증서 신규발급, 갱신발급, 재발급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이 제출한 공인인증기관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통해 당해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한다.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갱신발급,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상위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발급 등을 수행한다.

3.3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신규 발급 신청에 준하는 절차로 신원을 확인한다.

4. 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4.1 공고설비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기기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4.2 공고방법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 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매주 1회 갱신한 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5.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5.1 물리적, 절차적, 기술적 보호조치

인터넷진흥원은 물리적 접근통제, 전원, 수해방지, 화재예방, 매체저장, 폐기물 처리, 원격지 백업 등 물리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상위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인터넷진흥원은 역할별 업무 분리, 주요업무별 수행인원 등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상위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키 생성, 키 크기 및 해쉬값,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 전자서명생성키 삭제·파기 방법, 전자서명생성키 사용기간, 컴퓨터 및 네트워크 보안통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상위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5.2 인적 보안

인터넷진흥원은 인적 보안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상위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5.3 감사 기록 및 기록 보존

인터넷진흥원은 감사기록 검토 및 보호, 사건발생 통보 등 감사 기록과 기록 보존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상위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5.4 장애 및 재해복구

인터넷진흥원은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 장애발생 대책, 데이터 훼손·멸실 대책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상위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6. 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6.1 보증

인터넷진흥원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증한다.

-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
-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

인터넷진흥원은 이 인증업무준칙의 각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해 또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인증업무의 처리지연 또는 처리 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2 분쟁 해결

인터넷진흥원과 공인인증기관 또는 신뢰당사자와의 인증업무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